

#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 호  
 등록연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편집인 공보실장 최철호  
 인쇄국 국제출판인쇄주식회사

## 차 례

△조 례..... 13091

제 449 호 서울특별시립 병원 수가조례중 개정

△규 칙..... 13093

제 581 호 서울특별시 공사 시공업자 평가 심사위원회

제 582 호 서울특별시립 병원 수가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제 583 호 서울특별시 수유토지 구역정리 분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584 호 서울특별시 성산토지 구역정리 분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585 호 서울특별시 불광토지 구역정리 분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586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중 개정

제 587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 588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직제중 개정

제 589 호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규칙

제 590 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제 591 호 소방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제정의건중 개정

제 592 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훈 령..... 13122

제 221 호 시민봉사반(동)설치운영

제 222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및 소방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사 령..... 13129

( 2 ) 차 례

△공 시..... 13139

- 제 1050호 1966년도 서울특별시 제5회 추가 경정 예산
- 제 1055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56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57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58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59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60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61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62호 사료성분 등록 취소
- 제 1063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64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액 결정
- 제 1065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액 결정
- 제 1066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액 결정

△공 고..... 13146

- 제 129 호 도심지 동청사 건립활용 희망자 공모
- 제 130 호 1966년산 하곡제3차 수납장소별 일자결정
- 제 131 호 수유토저 구획정리지구 제3차 환지계획및 예정지 지정
- 제 132 호 제9회소방사보 승진시험실시
- 제 133 호 차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
- 제 134 호 FY66 제2종 공영주택 건설계획 변경
- 제 135 호 시유재산 매각 입찰
- 제 136 호 반려 우편물 공시 송달
- 제 137 호 1966년산 하곡수납 제4차 장소별 일자 결정
- 제 138 호 시유건물 철거조건부 매각처분
- 제 139 호 세목공고(고대앞—홍능간 도로확장)
- 제 140 호 토지 세목 공고
- 제 141 호 시영주택 (강이 아파트) 분양계획

# 조 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立病院 收價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2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49號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中 다음과같이 改正한다

別表 收價基準表中 “1” 診察및 診斷料 “ 2” 檢査料 “ 3” 藥價 “ 5” 注射料 “ 7” レント젠料”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診察및 診斷料

種 別	區 分	手 數 料	摘 要
診 察 券	1 枚	4원	單一料에 6個月間 有効
診 察 料	1 回	26%	◇
普通診斷書	1 通	50%	
特別診斷書	1 通	1,000%	
身體檢査料	1 回	100%	
시체檢査料	1 回	1,000%	
處 定 書	1 通	500—1,000%	
院外處方案	1 通	60%	
視野檢査料	1 回	400%	

但 診斷書等 2通以上 交付時는 1通을 超過하는 每1通에 對하여 基準料金の 半額을 加算徵收한다

2. 檢査料

( 4 ) 조 례

“檢査料”中 普通大小便檢査 1回 “10원”을 “20원”으로한다

3. 藥 價

種 別	區 分	施 藥 代	摘 要
內 服 藥(散劑)	1 日分	30원	
〃 (水劑)	1 日分	30원	
頓 服 藥	1 回分	30원	
外 用 藥	1 劑分	30원	

다만 高價藥을 使用할때는 그 實費를 加算徵收한다

4. 注射料 및 注射手數料

種 別	區 分	價 格 및 手 數 料	摘 要
皮下 및 筋肉注射(藥包含)料	1 回	40원	
靜脈注射(藥包含)料	1 回	70원	
링겔注射(藥包含)料	1 回	300원	
輸血注射(血液包含)料	1 回	1,000원	
血 液 代		800원	
皮下 및 근肉注射手數料	1 回	10원	
靜脈注射手數料	1 回	20원	
링겔注射手數料	1 回	100원	
輸血注射手數料	1 回	200원	

다만 高價注射藥을 使用할때는 그 實費를 加算徵收한다

7. 렌트金料

種 別	區 分	料 金	摘 要
胸 部 撮 影	1回(14×17)	450원	CHEST
〃	1回(11×14)	350원	〃

◇	1回(10×12)	300	◇
頭 部 撮 影	1 回	800	SKLL
乳 腺 突 起 撮 影	1 回	600	MASTOID
척 추 撮 影	1 回	600	
食 道 造 影 撮 影	1 回	1,200	
子 宮 造 影 撮 影	1 回	1,200	
上 部 胃 腸 造 影 撮 影	1 回	1,500	
膽 囊 撮 影	1 回	1,500	
大 腸 撮 影	1 回	2,000	
腎 盂 造 影 撮 影	1 回	2,000	
齒 科 撮 影	1 回	100	
척 추 造 影 撮 影	1 回	2,000	
氣 管 技 造 影 撮 影	1 回	2,000	
透 視	1 回	200-1,000	
間 接 撮 影	1 回	100	

附 則

이 條例는 西紀 1966年 8月 25日부터 施行한다

규 칙

서울特別市施工業者評價審査委員會 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81號

서울特別市施工業者評價審査委員會規則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 施工業者의 實態를 調査把握하고 都給 工事に 對한 施工評價를 하여 業者의 資質向上을 圖謀하는 同時에 將來指

名都給業者 選定에 參考로 하여 健實한 業者를 指名하고져 工事推進및 施工에 關한 事項을 審査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審査對象)** ① 評價는 50萬원 以上の 施工都給業者에 限하여 實施한다

**第3條 (委員會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 委員 12人과 幹事, 書記 各1人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第2副市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建設局長이 된다

③ 委員은 財務局長, 都市計劃局長, 水道局長, 土木課長, 鋪裝課長, 下水課長, 營繕課長, 區劃整理課長, 住宅課長, 施設課長, 給水課長, 會計課長이 된다

④ 幹事는 管理課長이 되고 書記는 管理課 建設行政係長이 된다

**第4條 (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事項을 管掌한다

1. 施工都給業者評價審査에 關한 事項
2. 市指定出入業者및 工事指名入札業者 選定評價表 作成에 關한事項
3. 其他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5條 (委員長等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總括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여 委員長이 有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幹事와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한다

**第6條 (會議)** ① 委員長은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會議는 委員過半數의 出席과 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第7條 (表彰等)** ① 施工評價調査結果 優秀한 業者는 表彰 또는 工事入札指名에 優先權을 주도록 서울特別市契約審査委員會에 建議한다

**第8條 (施行細則)** ① 委員會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1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82號

서울特別市立病院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第2項 減額對象者(實費患者)의 各項과 別表2 및 別表 第4號書式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6條

2. 減額對象者(實費患者)

가. 居住地 洞長이 施行하는 要救護對象者 證明所持者

나. 國防部傘下 機關에서 發行하는 派越將兵戰死者 家族 및 派越將兵家族證明 또는 確認證明所持者 다만 家族의 範圍는 同一戶籍內에 있는 直系尊卑屬(그配遇者包含) 및 弟妹로 한다

다. 市職員 및 家族, 다만 所屬長(市는 課長, 區는 區總務課長, 洞은 洞長 其他 出張所 事業所는 所長)이 發行하는 別表 第4號書式의 診察依頼書 所持者

라. 減額對象者의 減額限度額은 別表2에 依한다

附 則

이規則은 1966年 8月 15일부터 施行한다

(別表 2)

減額對象者(實費患者) 減額基準表

區 分	減 額 率
種貧者 및 要救護	一般有料患者收價額의 5割減額
派越將兵戰死者遺家族	診察券 및 診察料만을 無料로 하고 其他는 一般有料患者收價額의 5割減額
派越將兵家族	一般有料患者收價額의 4割減額
市 職 員	一般有料患者收價額의 5割減額
市 職 員 家 族	一般有料患者收價額의 4割減額

다만 減額診療收價額中 食代 및 醫藥品材料代가 그實費에 未達될時는 減額

( 8 ) 규 칙

된 收價額에서 그 實費未達額을 加算徵收한다

(4號書式) 市職員(家族)診療依頼書

市 職 員			市 職 員 家 族		
所 屬			職員과의關係	職業	
職 位	職名		姓 名		
姓 名	한글 漢文( )		生年月日	性 別	
生年月日		性別			

上記者は ○○所屬市職員(市職員家族)으로서 貴病院의 診療를 依頼합니다

西紀 年 月 日

(所屬長)

所 屬

職 位

職 名

姓 名

印

서울特別市立○○病院長 貴下

서울特別市水躰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 施行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1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83號

서울特別市水躰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 施行規則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水躰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以



下 條例라한다)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條例施行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第2條 (賦課基準) 條例第3條 및 條例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分擔金の 賦課基準은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1. 筆別 分擔金 賦課額은 筆別 増差額에 總負擔率을 乘한 額으로한다
2. 筆別 増差額은 整理後 筆別評定價格에서 整理前 筆別評定價格을 控除한 額으로한다
3. 總負擔率은 條例第3條에서 規定한 分擔金 賦課總額을 總増差額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4. 總増差額은 整理後 筆別評定價格의 總合計額에서 整理前 筆別評定價格의 總合計額을 控除한 것을 말한다

第3條 (賦課時期와 方法) 分擔金賦課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整理後 賦課함을 原則으로하나 整理前에 賦課할때에는 다음 方法에 依하여 賦課한다

1. 分擔金賦課總額을 換地豫定地 總計面積으로 나눈 金額을 坪當 負擔額으로 하여 이를 筆別 換地豫定地面積에 乘하여 算出한다
2. 換地處分(確定)이 끝났을때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負擔金과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既賦課한 分擔金을 比較한 増差額을 追徵 또는 還付한다

第4條 (分擔金の代納) 分擔金에 自己所有의 土地로 代納을 願하는者가 있을때에는 서울特別市 不動產價格審査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同一換地地區內의 土地에 限하여 代納을 許用할수 있다 다만 土地로 代納할 境遇에는 그面積이 25坪 以上이러야 하며 그位置는 市長이 決定한다.

第5條 (異議申立) 賦課決定단 分擔金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納入告知書를 받은날로부터 10日以內에 限하여 異議를 申立할수있다

第6條 (代理人의選定) ① 義務者가 市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分擔金 納入에 關한 代理人을 選定하고 市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代理人에 對한 通知는 義務者에 對한 通知로본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城山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 施行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1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84號

서울特別市城山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 施行規則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城山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以下 條例라한다)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條例施行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第2條 (賦課基準) 條例第3條 및 條例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分擔金의 賦課基準은 다음과같이 算出한다

1. 筆別 分擔金 賦課額은 筆別 增差額에 總負擔率을 乘한 額으로한다
2. 筆別 增差額은 整理後 筆別評定價格에서 整理前 筆別評定價格을 控除한 額으로 한다
3. 總負擔率은 條例第3條에서 規定한 分擔金 賦課總額을 總增差額으로 나눈것을 말한다
4. 總增差額은 整理後 筆別評定價格의 總合計額에서 整理前 筆別評定價格의 總合計額을 控除한것을 말한다

第3條 (賦課時期와方法) 分擔金賦課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整理後 賦課함을 原則으로하나 整理前에 賦課할때에는 다음方法에 依하여 賦課한다

1. 分擔金賦課總額을 換地豫定地 總計面積으로 나눈金額을 坪當 負擔額으로하여 이를 筆別 換地豫定地面積에 乘하여 算出한다
2. 換地處分(確定)이 끝났을때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分擔金과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既賦課한 分擔金을 比較한 增差額을 追徵 또

는 還付한다

第4條 (分擔金の代納) 分擔金에 自己所有의 土地로 代納을 願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서울特別市 不動産價格審査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同一換地地區內의 土地에 限하여 代納을 許用할수 있다 다만 土地로 代納할 境遇에는 그 面積이 25坪以上이러야 하며 그位置는 市長이 決定한다

第5條 (異議申立) 賦課決定한 分擔金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納入告知書를 받은날로부터 10日以內에 限하여 異議를 申立할수 있다

第6條 (代理人의選定) ① 義務者가 市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尙지없이 分擔金 納入에關한 代理人을 選定하고 市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代理人에 對한 通知는 義務者에 對한 通知로 본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佛光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 施行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1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85號

서울特別市佛光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 施行規則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佛光土地 區劃整理分擔金 徵收條例(以下 條例라한다)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條例施行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第2條 (賦課基準) 條例第3條 및 條例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分擔金の 賦課基準은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1. 筆別 分擔金 賦課額은 筆別 増差額에 總負擔率을 乘한 額으로한다
2. 筆別 増差額은 整理後 筆別評定價格에서 整理前 筆別評定價格을 控除한

額으로한다

- 3. 總負擔率은 條例第3條에서 規定한 分擔金 賦課總額을 總增差額으로 나  
는것을 말한다
- 4. 總增差額은 整理後 筆別評定價格의 總合計額에서 整理前 筆別評定價格  
의 總合計額을 控除한것을 말한다

**第3條 (賦課時期와方法)** 分擔金賦課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整理後 賦課  
함을 原則으로하나 整理前에 賦課할때에는 다음 方法에 依하여 賦課한다

- 1. 分擔金賦課總額을 換地豫定地 總計面積으로 나눈金額을 坪當 負擔額으  
로 하여 이를 筆別 換地豫定地面積에 乘하여 算出한다
- 2. 換地處分(確定)이 끝났을때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分擔金  
과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既賦課한 分擔金을 比較한 增差額을 追徵 또  
는 還付한다

**第4條 (分擔金の代納)** 分擔金에 自己所有의 土地로 代納을 願하는자가 있  
을때에는 서울特別市 不動產價格審査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同一換地地區  
內의 土地에 限하여 代納을 許用할수 있다. 다만 土地로 代納할 境遇에는  
그面積이 25坪 以上이 라야 하며 그位置는 市長이 決定한다

**第5條 (異議申立)** 賦課決定한 分擔金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때에는 納入告  
知書를 받은날로부터 10日以內에 限하여 異議를 申立할수 있다.

**第6條 (代理人의 選定)** ① 義務者가 市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分擔金 納入에 關한 代理人을 選定하고 市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代理人에 對한 通知는 義務者에 對한 通知로 본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규칙제58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표”중

5급 갑류란의 “지방행정서기 1,117”을 “지방행정서기 1,116”으로

“지방수의원 6”을 “지방수의원7”로 한다

5급을류란의 “지방행정서기보 1,564”를 “지방행정서기보 1,559”로

“지방간호기원보 163”을 “지방간호기원보 165”로

“계 2,419인”을 “계 2,416인”으로한다

“공무원계 6,287인”을 “공무원 계 6,284인”으로

“기능직계 862인”을 “기능직 계 843인”으로

“고용원 1,040인”을 “고용원 1,062인”으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승진임용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공포한다

서기 196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규칙제58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4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승진임용의원칙)** 제경 세무 행정 토목직렬과 기타 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렬의 승진에있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된자를 임용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결원보충이 필요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3조 (대상)** 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로 부터 결원수의 5배수범위 내외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4) 규 칙

**제4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관장 실시한다

**제5조 (시험의방법)** 1) 시험은 별표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객관식70% 주관식(단위업무개선)30%로하여 도합100점 만점으로한다

2) 시험과목중 실무는 주관식 기타는 객관식으로 한다

**제6조 (승진임용예정자결정)** 1)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 후보자명부의 득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하되 결원수불 초과할수 없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7조 (준용규정)** 기타 이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동령 제27조 (시험의 일부면제)와 제28조(시험의 합격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승진임용시험과목표

직렬별	시험과목		
행정직	1) 행정법	2) 행정학	3) 실무
재정직	1) 경제원론	2) 재정학	3) 실무
세무직	1) 경제원론	2) 재정학	3) 실무
토목직	1) 응용력학	2) 시공학	3) 실무

기타 직렬은 필요시 수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공포한다

서기 1966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규칙제588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회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중의 그정원은 따로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회관에 서무과 경리과와 기술과를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리과장은 지방재정사무관으로, 기술과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1) 서무과에 서무계와 업무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보한다

2) 서무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인사 및 예산
- 나. 문서
- 다. 관인보관
- 라. 당직
- 마. 과내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2. 업무계

- 가. 대관및 부속실 운영
- 나. 행사계획및 안내
- 다. 수포
- 라. 운영위원회 개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1) 경리과에 경리계와 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재정주사 또는 지방재정주사보로 보한다

2) 경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경리계

- 가. 회계 및 경리
- 나. 금전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6) 규 칙

- 다. 회관 사용료의 징수
- 라. 용도
- 마. 물품출납보관
- 바. 매포
- 사. 파내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리제

- 가. 차량 전차의 관리
- 나. 청소
- 다. 청소 유지관리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1) 기술과에 기술제와 무대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건축기사 지방건축  
기사보 또는 지방기계기사 지방기계기사보로 보한다

2) 기술과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제

- 가. 건축물과 부속시설의 설계 및 시공
- 나. 전기 및 냉 난방 관리
- 다. 기계수리
- 라. 파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무대계

- 가. 무대설비
- 나. 음향 및 조명
- 다. 영사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25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 ◎서울特別市規則第589號

##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規則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市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職務와 關聯된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習得하는데 所要되는 經費(以下獎學金이라 한다)를 支給하여 公務員의 資質向上을 圖謀하고 나아가서 市政發展에 奇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支給對象) 獎學金を 支給받고자 하는者(以下受給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여야 한다

1. 市所屬公務員으로 2年以上 勤務한者
2. 學究熱이 旺盛하고 勤務成績이 優秀한者
3. 長期勤續이 豫見되는者
4. 其他 獎學金支給이 適宜하다고 認定되는者

第3條 (受給者選拔) 受給對象者의 選拔은 試驗에 依하여 市長이 決定한다 다만 研究分野가 特殊하고 特定人에게 支給할 必要가 있을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條 (支給額) ① 獎學金支給額은 教育機關에 納付하는 公納金 金額을 原則으로 한다

② 豫算形便에 따라 前項의 金額을 減額또는 教育履修에 所要되는 經費를 增額支給할수 있다

第5條 (服務義務) 受給者는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3年以上의 服務義務를 진다

第6條 (還給措置) 受給者가 獎學金を 受領하고자 할때에는 財政保證人을 設定하여야 하며 다음各號1에 該當할 境遇에는 財政保證人과 連帶責任으로 還給하여야 한다

1. 受給者가 教育期間中 教育을 中斷하거나 修業을 怠慢히 하였을때
2. 特別한 事由없이 前條에 依한 服務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였을때

## 附 則

① (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規則 公布以前에 支給한 獎學金은 이 規則에 依하여 支給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직제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규칙제590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예산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예산과) 1) 예산과에 예산제1계 예산제2계와 외자관리계를 두고 예산제1계장과 예산제2계장은 지방재경사무관으로 외자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재경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조제2항 제2호 예산제2계 분장사무중 “마 외자도입사무의 조정”를 삭제한다

동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가한다

3. 외자관리계

가. 외자수급계획에 관한사항

나. 외자도입에 관한사항

다. 차관에 관한사항

라. 외원기관의 잉여물자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계과) 제2항 제1호 서무계분장사무중 “나 의원기관의 잉여물자 인수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도시계획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가한다

제14조 (도시계획국) 3)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 1인을 둘수있다

제18조의2 (주택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주택과) 1) 주택과에 주택제 주택관리제 기술계와 상가주택계를

두고 주택계장과 주택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계장은 지방  
건축기과로 상가주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가한다

4. 상가주택제

- 가. 상가아파트 건립후보지 책정
- 나. 상가아파트 건립계획수립
- 다. 상가아파트 건물배치및 기본설계
- 라. 상가아파트 건립 민간기업자의 선정및 계약조건에 관한사항
- 마. 주택점포및 아파트 입주금 결정
- 바. 상가아파트 건립 예정지구내 재산협의
- 사. 상가아파트 건설에 관한 시공감독

제30조 (청소제1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소제1과) 1) 청소제1과에 작업제와 장비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양정과) 1) 양정과에 양정계 경리제와 조작제를 두고 양정계장과  
조작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內務部 長官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消防官 派出所의 名칭 位置와 管轄  
區域制定의 件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30日

서울特別市長 金 煥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91號

消防官 派出所의 名칭 位置와 管轄區域 制定의 件中 改正規則  
消防官 派出所의 名칭 位置와 管轄區域制定의 件中 다음과같이 改正한다  
別紙 消防官 派出所의 名칭 位置와 管轄區域中 다음과 같이 한다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表

管轄署	名 稱		位 置	管 轄 區 域	
	新	舊		新	舊
龍山消防署	新	西橋洞 消防官 派出所	西橋洞 128의2	麻浦區 東橋洞 西橋洞 望遠洞 合井洞 上水洞 下水洞 당人洞 倉前洞 을도동 賀中洞 新井洞	
龍山消防署	舊	桃花洞 消防官 派出所	桃花洞 33의 9	阿剎洞 (阿剎2洞 阿剎5洞) 孔德洞 新孔德洞 桃花洞 龍江洞 土亭洞 麻浦洞	阿剎洞 孔德洞 新孔德洞 桃花洞 大興洞 (鐵道以南 人線以南) 龍江洞 土亭洞 麻浦洞 玄石洞 新井洞 을리동 (당人線 以南)
龍山消防署	舊	大興洞 消防官 派出所	大興洞 2	阿剎洞 (阿剎3洞 阿剎4洞) 大興洞 을리동 玄石洞 考立山洞 新水洞 舊水洞	老立山洞 新水洞 舊水洞 上水洞 望遠洞 賀中洞 下水洞 당人洞 栗島洞 西橋洞 合井洞 東橋洞 을리동 (당人線 以北) 大興洞 (당人線 以北)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 職制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8月 3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92號

서울特別市 職制改正의 件

서울特別市 職制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 (警察局) 第1項中 “情報課” 다음에 “와外事課”를 挿入한다

第51條 (保安課) 第1項中 “防犯少年係”를 “少年係”로 한다

第51條 第2項은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 ② 保安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保安係

가. 保安業務 企劃 및 調整

나. 防犯計劃 및 指導

다. 課內 職員服務 및 人事

라. 遊船業 射伴行爲 遊興 接客業所 偷落行爲 廣告物 其他風俗事犯 濫京

마. 興信業 許可 및 團束

바. 遺失物 處理

사. 安全 保護業務

아. 戶口調查

자. 原動機 檢査 및 團束

차. 古物商 典當舖 團束

카. 課內他係 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事項

2. 少年係

가. 青少年 警察의 調查企劃 및 指導

나. 少年의 輔導 相談 責質 鑑別指導

다. 少年犯罪中 少年法 第4條 第2,3號에 該當하는 保護事件의 取扱指導

라. 未成年者 保護法 및 兒童福利法 運營指導

마. 公演場 團束指導

바. 家出人 및 迷兒手配保護와 指導

사. 靑少年 保護對策 委員會 運營 및 民間靑少年團體와의 協助

第54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條 (搜查課) ① 搜查課에 搜查1係 搜查2係 搜查3係 搜查4係 搜查5係와 鑑識係를 두고 係長은 警監으로 補한다

第54條 第2項中 “1第1係” “2第2係” “3第3係” “4第4係”를 “1搜查1係” “2搜查2係” “3搜查3係” “4搜查 4係”로 “5鑑識係”를 “6鑑識係”로 하고 “5搜查5係”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搜查5係

가. 暴力事犯 資料蒐集分析

나. 暴力事犯에 關한事項

第55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 (情報課) ① 情報課에 情報1係 情報2係와 情報3係를 두고 係長은 警監으로 補한다

第55條 第2項中 “1第1係” “2第2係” “3第3係”를 1情報1係 “2情報2係” “3情報3係”로 하고 “4第4係와 가乃至바”는 削除한다

第5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條 (外事課) ①外事課에 外事1係 外事2係와 外事3係를 두고 係長은 警監으로 補한다

② 外事課의 係別 分掌事務는 다음各號와 같다

1. 外事1係

가. 外事警察에 關한 調查 研究 企劃 및 指導

나. 外事課報 綜合分析報告

다. 外國人 및 이에 關聯된 身元調查

라. 出入國者에 關한 事項

마. 課內庶務와 他係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外事2係

가. 對日外事 課報 蒐集 評價

나. 日本人 在日僑胞 出入國者 動態

다. 日本關係 外事事犯中 다음 犯罪에 關한 事項

(1) 出入國 管理法에 規定된 犯罪

(2) 密航團束法에 規定된 犯罪

(3) 다음의 犯罪로서 外國人에 關한 事項

㉞ 刑法 第1編 第1章(內亂) 및 第2章(外患)에 規定된 犯罪

㉟ 刑法 第3條 乃至 第5條에 規定된 犯罪

㊱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犯罪

㊲ 外國換管理法에 規定된 犯罪

㊳ 國內財產逃避防止法에 規定된 犯罪

㊴ 強制退去의 對象이 되는 重要犯罪

㊵ 外國定期刊行物 輸入配布에 關한法律違反

라. 其他 對日 外事警察業務

3. 外事3係

가. 對日以外의 外事諜報 蒐集評價

나. 對日以外의 諸外國人 및 同海外僑胞 出入國者 動態

다. 對日關係 以外의 外事事犯中 다음 犯罪에 關한 事項

1. 出入國管理法에 規定된 犯罪

2. 密航團束法에 規定된 犯罪

3. 다음의 犯罪로서 外國人에 關한 事項

㉞ 刑法 第1編 第1章(內亂) 및 第2章(外患)에 規定된 犯罪

㉟ 刑法 第3條 乃至 第5條에 規定된 犯罪

㊱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犯罪

㊲ 外國換管理法에 規定된 犯罪

㊳ 國內財產 逃避防止法에 規定된 犯罪

㊴ 強制退去의 對象이 되는 重要犯罪

㊵ 外國定期刊行物 輸入配布에 關한 法律違反

라. 其他 對日 外事警察業務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제221호

서기 1966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시민봉사반(동) 설치운영

1. 매년 일선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집중 팔리처리함으로써 “신뢰받고 봉사하는 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별첨요강을 시달하니
2. 각구청장은 서기 1966년 9월 1일을 기하여 관하 전동에 시민봉사반을 설치운영 할것이며
3. 창조적인 노력과 행정력의 집중 지원을 통하여 본제도의 개선발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것
4. 본청 각국과에서는 본 요강의 내용을 양지하고 이후 사무이양등 사무 관리면에 참고하기 바람

市民奉仕班(洞)設置要綱

一. 必要性

1. 現 況

現在 다음 事務를 各洞마다 一定基準없이 全職員이 擔當別로 分散處理하고 있음

區 分	民 願 書 類 名	處 理 期 間	專 決	備 考
諸證明에關한事項	1. 印鑑證明願	即 時	洞長	△票는
	2. 拉致者證明願	〃	〃	經由書



	3. 無家屋證明願	2時間以内	◇	類
	家屋滅失證明願	◇	◇	
	家屋査核原本	◇	◇	
	△所在證明願	◇	◇	
	財産税課税證明願	即 時	◇	
	災害證明願	2時間以内	洞長	
	△閉業證明願	即 時	◇	
	營業한일이없는證明願	◇	◇	
	△施設證明願	◇	◇	
	要求者證明願	◇	◇	
	同居證明願	◇	◇	
	居住證明願	◇	◇	
	△不居住證明願	◇	◇	
	洞籍記載無한證明願	◇	◇	
計	16			
住民登録에 關한事項	住民登録謄抄本交付申請書	即 時	◇	
	轉入申告確認	◇	◇	
	住民登録無한證明願	◇	◇	
	退去申告書	◇	◇	
	轉入申告書	◇	◇	
計	5			
紹介營業에 關한事項	紹介營業申告書	10日以内	◇	
	紹介營業場所移轉申告書	◇	◇	
	紹介營業廢業申告書	即 時	◇	
計	3			
總計	24			

## 2. 分 析

### 가. 制度面

同質業務의 集中管理原則에 反하여 洞에서 處理하는 總24件의 民願書類를 各其 事務分擔에 따라 職員에게 分散處理시키고 있어 事務處理의 非能率을 招來하고 있다

(參考) : 未課稅證明願의 經由處理에 있어 住民登錄事務擔當者와의 協助에 所要되는 時間이 오래 걸린다

### 나. 運營面

家庭市長制의 兼行運營에 따라 民願擔當職員의 出張勤務時間의 過多로 擔當職員不在時 來嚮한 民願人에게 많은 不便을 주고 있다

(參考) : 洞職員은 現在 日 5勤務時間을 家庭市長으로 勤務를 原則으로 하고 있음

## 3. 改善方案

洞에 民願事務를 專擔處理할 市民奉仕班을 設置運營한다

### 二. 目 標

現在 洞長의 權限下에 分散處理하고 있는 各種民願事務를 集中管理함으로써 市民의 서비스 向上과 事務能率의 向上을 期하여 “信賴받고 奉仕하는 洞行政”을 具顯하는데 있음

### 三. 基本指針

1. 民願處理專擔班(市民奉仕班)을 設置運營, 擔當初로 各職員에게 分散處理하고 있는 民願事務를 市民奉仕班에 集中處理케 한다

### 2. 民願事務處理方式의 改善

現行 分散處理制에서 오는 各種 非能率的인 處理方式을 改善하여 事務處理의 能率化를 期한다

### 3. 市民奉仕班 擔當者의 出張抑制

市民奉仕班勤務者는 一切의 出張等を 抑制하여 離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四. 市民奉仕班設置運營(概要)

1. 市民奉仕班

가. 構成

(1) 班長

洞事務長이 兼任한다

(2) 班員

該洞의 民願書類處理件數 및 職員數를 參酌하여 1名 乃至 2名으로 構成한다

나. 機能

(1) 各種 民願事務의 處理

(2) 民願用紙의 無償配付

(3) 民願相談

다. 支援

洞長以下 全職員(家庭市長)은

○民願事項의 蒐集傳達

○市民奉仕班에서 處理한 民願書類의 傳達

○確認事項의 調査復命等 市民奉仕班에서 要求하는 事項을 優先적으로 支援한다

2. 實施時期

西紀 1966年 9月 1日

3. 實施對策

서울特別市管轄 全洞

4. 民願案内所에 對한 措置

既設의 民願案内所 또는 이의 他事務에 屬한 類似한 機能은 모두 市民奉仕班에 吸收統合한다

五. 設置要領

1. 市民奉仕班位置

各洞 市民奉仕班은 現民願窓口를 利用設置한다(窗口에는 市民奉仕班이란 標札을 揭示한다)

2. 帳票의 集中管理

民願事務의 處理에 必要한 各種 帳票을 市民奉仕班에 集中管理한다

3. 市民奉仕班 從事職員의 配置

市民奉仕班 從事職員은 現職員中 可及의 事務에 精通하여 性格이 溫順 明朗하고 容貌가 端正한 職員을 選定配置한다

4. 自體教育實施

選定된 市民奉仕班 從事職員은 市民奉仕班設置運籌에 앞서 自體教育을 實施하여 對民事務全般에 걸친 處理節次要領等を 熟知케 한다

六. 市民奉仕班의 勤務要領

1. 市民奉仕班 勤務職員은 固定配置한다

2. 從事職員은 서내행 150~2438(66.6.16)로 示達된 家庭市長勤務要綱에서 除外한다

3. 市民奉仕班에 職員을 配置한 洞에서는 民願事項의 處理에 隨件되는 現地 確認調査復命을 家庭市長으로 하여금 代行케 하여 市民奉仕班勤務職員이 暫時도 出張을 憑籍하여 離席하는 事例가 없도록 한다

4. 市民奉仕班勤務職員은 66.6.1 定例區廳長會 當時 示達한 “새서을 對民機關服務指針” 第7項 對民接待要領에 依하여 親切公正히 應對處理하여야 한다

5. 市民奉仕班勤務職員은 名札을 常時佩用하여야 한다

七. 事務處理節次의 簡素化

民願事務의 迅速한 處理를 爲하여 아래와 같이 決裁 過程을 簡素化한다

1. 常例的(무우된化한것)인 事項(別表1)은 市民奉仕班 擔當者가 捺印한 後 最終 決裁權者의 決裁만으로 施行한다 (中間 決裁 過程의 省略),

2. 最終 決裁權者 不在時에는 同職務를 代行하는 者의 決裁로서 施行한다

八. 效果

1. 制度上

○各種民願書類를 集中處理할수 있는 專擔班을 常置함으로써 制度上行政의 專門化와 能率化를 期할수 있다

○區에 市民奉仕室 洞에 市民奉仕班을 두게 되어 階層別 事務處理機構와 體制의 整序化가 이룩된다

2. 運營面

○分業化에 依한 事務處理의 專門化와 能率化가 可能하다

3. 市民側

○窓口 待期時間이 短縮된다

九. 措置事項

이 要綱과「서울 家庭市長 勤務要綱」과 抵觸되는 部分은 此要綱에 依한다 (別表 1)

常例的인 民願事項

處理機關	民 願 書 類 名	備 考
洞	印 鑑 證 明 要 求 護 者 證 明 同 居 證 明 居 住 證 明 不 居 住 證 明 洞籍記載無한 證明 住民登錄謄抄本交付申請 轉 入 申 告 確 認 住民登錄無한 證明	

◎서울특별시훈령제222호

경 찰 국 장

경 찰 서 장

소 방 서 장

서울특별시 경찰서 및 소방서 사무 분장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기 196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 90 )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서 및 소방서 사무 분장 규정중 개정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경찰서에 경무계 보안계 소년계 교통계 경비통신계 수사계 정보계를 두고 제장은 경장 또는 경위로보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무에 관한 사항
2. 사행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3. 고물상 전당포 원동기 기타 치안관계 제 업무에 관한 사항
4. 유실물 매장물 및 표류물 취급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6. 풍속 경찰에 관한 사항
7. 호구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모집 단속에 관한 사항
9. 총포 화약류 및 폭발물 단속에 관한 사항
10. 흥신업 유선업 단속에 관한 사항
11. 윤락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2. 안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3. 문화재 도량형기 시장 묘지 화장장등 조장 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
14. 죽결 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소년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경찰의 조사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소년 보도 상담 자질 감별 지도에 관한 사항
3. 소년범죄중 소년법 제4제2,3호에 해당하는 보호사건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미성년자 보호법 및 아동 복리법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5. 공원장 단속에 관한 사항
6. 가출인 및 미아수색수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보호 대책 위원회 운영 및 민간 청소년 단속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교통제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경찰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교통 소통에 관한 사항
3. 교통 법규 위반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4. 교통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5. 교통 안전 시설 관리 및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6. 운전 면허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차량 행정 처분 집행에 관한 사항
8. 교통 순찰중 운영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 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통 안전 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 2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제8조로 제6조를 제9조로 제7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사 령

◎서기 1966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서기관	경	문	현
관광운수국 운수사업과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서기관	박	종	문
운수사업소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이	인	재

( 3 2 ) 사 령

윤수조정관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배	문	환
내무국인사과 고과계장에 보함	내무국인사과 지방행정사무관 유	인	형
	내무국인사과 지방행정사무관 극	용	호
	내무국인사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진	원
	내무국인사과 지방행정사무관 배	문	환
서울특별시 직원인사상담소 상담관을 명함	내무국인사과	맹	은
서울특별시 직원인사상담소 간사를 명함		정	순
조건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경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기
조건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기
내무국감사과 근무를 명함			호
조건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호
판광윤수국 차장과 근무를 명함			성
조건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성
재무국회계과 근무를 명함			회
조건부 지적지원보에 임함			회
재무국세정과 근무를 명함			승
기한부 공무원(지방행정서기보 서선문 휴직기간중)에 임함		양	기



5급 율류 7호봉을 급합  
 사방관리소 근무를 명함

민 예 흥

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보육병원 근무를 명함

문 영 예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 영 열  
 이 경 희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한 현 태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8월 3일

건축과 지방건축기사보 이 동 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권 성 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갯생원 지방수위 이 춘 흥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감봉처 처함

◎서기 1966년 8월 4일

지방행정서기 주 갑 술  
 복직을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하수과 지방토목기사 윤 구 용

(34) 사 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8월 15일

중구점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한 봉 우

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김 인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보건사회국사회과 근무를 명함

황 인 욱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축산기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산업국농정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8월 16일

토목과 지방기제기사 김 수 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토목과 전기기과 김 인 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서기 1966년 8월 22일

건설국토목과 지방토목기원 윤 석 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8월 23일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이 덕 제

수도관리사업소 지방재경주사보 박 춘 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김	중	수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6년 8월 25일		
성동구 지방행정사무관 허	윤	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호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감봉에 처함		
운수사업과 지방행정사무관 장	난	진
주택과 지방건축기좌 한	능	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호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성북구보건소 지방의무기좌 유	희	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3호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서대문병원 지방행정사무관 배	남	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 3호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수도국시설과 지방토목기좌 열	창	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호 규정에 의하여 6월간 감봉에 처함		
수도국시설과 지방토목기사 이	창	우
수도국결리과 지방행정주사 박	석	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호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감봉에 처함		
주택과 지방건축기사 일	병	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호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에 처함		
건축과 지방건축기사보 심	두	한
건축과 지방건축기원 조	태	응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호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주택과 지방건축기원 이	성	중
계획과결주택과 지방건축기원 이	호	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호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감봉에 처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최	석	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 3호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업무과 지방재정서기 최	진	영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호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철	영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호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신	봉	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 3호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박	중	민	
증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신	경	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 2호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감봉에 처함			
토목과 지방토목기사 신	문	수	
토목과 토목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토목과 지방토목기과 정	원	영	
토목과 토목계장겸 토목과 가로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단 검무처 근무를 명함			
계획과 지방행정주사 최	상	철	
계획과 종합계획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기 1966년 8월 27일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이	의	백	
갱생원 근무를 명함			
의약과 지방행정주사 김	준	경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장제장 지방행정주사 유	지	일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신	장	균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허		현	
방역사무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하	연	수	
장제장 근무를 명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최	운	욱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중부병원 지방행정주사 송	만	섭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서부병원 지방행정주사 신	상	덕
서부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이	명	환
장충체육관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 김	유	영
공보실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박	형	원
하수과 근무를 명함	토목시험소 지방행정주사 문	학	우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정	현	국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주	두	기
	성북구 지방행정주사 오	원	택
	성북구 지방행정주사 김	봉	식
	성북구 지방행정주사 김	동	욱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권	용	식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이	성	달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최	상	대
성북구 근무를 명함	강생원 지방행정주사 성	우	경
영선과 근무를 명함			

( 3 8 ) 사 명

부녀과 근무를 명함	부녀사업관 지방행정주사 안	기 정
부녀사업관 근무를 명함	근우회관 지방행정주사 김	철 수
용산구 근무를 명함	남부병원 지방행정주사 이	인 영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유	지 철
공보실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찬 주
양정파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양	재 경
청소계2과 근무를 명함	노량진수원지사무소지방화공기사보 원	세 은
운수사업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재경주사보 김	용 복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 고	원 욱
경직을 명함	내무국총무과결장총체육관 지방행정주사 정	준 상
공보실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종 현
농정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농업토목기사 임	봉 호
복직을 명함	지방토목기원보 하	상, 탁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상무과 기계기사 신 학 주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66년 8월 30일 二 직을 면함

◎ 서기 1966년 8월 1일

진 국 부

조건부 지적기원보에 일함

부과과 근무를 명함

◎ 서기 1966년 8월 2일

노래출장소 지방행정주사 노 상 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서기 1966년 8월 4일

길음동 지방재정서기보 한 장 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서기 1966년 8월 5일

삼선제1동 지방행정서기 이 병 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서기 1966년 8월 8일

승인출장소 지방사세주사보 경 동 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서기 1966년 8월 12일

징수과 지방조무(운전)수 권 영 범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서기 1966년 8월 15일

정화동사무장 지방행정주사 오 원 태

총무과 근무를 명함

길음동 지방행정주사 오 진 영

복직을 명함

(40) 사 령

경화동 사무장 근무를명함	송천동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문	민	자
승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8월 18일		부선동 지방행정서기 김	학	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8월 2일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 박	의	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8월 5일		지방간호기원보 신	임	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8월 1일			최	선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응
아현제5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8월 2일		아현제5동 지방행정서기 임	해	용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8월 11일		공덕제3동 지방조무보조수 최	종	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6년 8월 16일			이	성
조건부 지방재정서기에 임함				우
총무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8월 11일		효창동 지방행정서기 유	태	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8월 15일

朴 源 淑  
 朴 容 浩  
 柳 長 夏

조건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징수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8월 20일

건설과 조건부지방건축기원보 鄭 夏 峻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50호

서기 1966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함

서기 196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회 계 별	추가경정예산액	기 정 예 산 액	금 회 추 가 액
일 반 회 계	8,227,822,100	7,342,777,200	885,044,900
시 민 회 관 비 특 별 회 계	30,086,400	30,086,400	
공 익 전 당 포 비 특 별 회 계	6,913,900	6,913,900	
주 택 비 특 별 회 계	978,916,000	565,950,100	412,965,900
토 지 구 획 경 리 비 특 별 회 계	920,756,200	896,356,200	24,500,000
택 지 조 성 비 특 별 회 계	340,394,400	340,304,400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	174,527,300	137,876,300	36,651,000
서범농촌개발조성사업 비특별회계	120,300	120,300	
재해구호사업비특별회계	6,566,300	6,566,300	
하수처리장특별회계	155,000,100	155,000,000	100
사환곡관리특별회계	239,800	239,800	
수도비특별회계	2,511,017,140	2,511,017,140	
운수사업비특별회계	560,611,600	411,443,190	149,168,500
합 계	13,912,971,540	12,401,641,140	1,508,330,400

◎서울특별시고시제1055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 제 지

입야소재지			지목	지 적	지 경 면 적	해 제 면 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영등포	후석동	63-133	임야	0,0329	0,0329	0,0329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후석동 79-16	정영환

2. 해제사유

본입지는 1954년도 사방지경지및 시공지로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이 타당하여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56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성북	정능	87-53	임야	0.0311	0.0311	0.0311	-	성동구금호동1가 1687	이낙중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7년도에 사방 지정하고 1939년도에 사방시공한임야로서 산림조정보다 타용도로 이용함이 효과가 더큰것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57호

사방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성북	미아	산13	임야	8.1600	8.1600	1.0708	7.0822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산 13	이복수
〃	〃	〃18	〃	1.5200	1.5200	0.7027	0.8103	〃	〃
			계	9.6800	9.6800	1.7805	7.8925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6년도에 사방 지정지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며 산림이외의 타용도인 학교부지로의 이용이 타당하여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58호

( 4 4 ) 고 시

사방 사업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성북	성북	5외1	임야	1.8816	1.8816	1.8816	-	성북구성북동 150	이희철

2. 해제사유

본 신청지는 1954년도에 사방지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시설인 학교부지 조성으로 이용도가 큰것으로 인정되어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59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성북	성북	10-2	임야	0.7400	0.7400	0.7400	-	서울특별시용산구청과동 1가 1의 60	민경식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4년도 사방지정지 및 시공지로서 사업성공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으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지정의 목적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60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 지점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성북	정능	72-1	임야	8.5316	8.5316	8.5316	0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 55	박단희
◇	◇	72-19	◇	0.8420	0.8420	0.8420	0	의11	◇
			계	9.3806	9.3806	9.3806	0		

2. 해제사유

본 임지는 1959년도 사방지경지로서 경사완만한 미임목지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지경의 목적 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61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점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성북	미아	35-5	임야	2.0412	2.0412	2.0412	0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동 4가 155	김윤동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6년도 사방 지정지로서 대부분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국토건설용 자재를 채취 이용함이 국토이용상 보다 효과적이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지정의 목적 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62호

사료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 성분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한다

서기 1966년 8월 30일

사료 성분등록취소사항

등록번호	사료공장		대표자	사 료			사료의 성분량				유효기간	비고
	명칭	소재지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38	대동사료공업	원호동 산51	이춘근	대추배합사료	대추사	대추용	%이상 14	%이상 3	%이하 7	%이하 10	64.7.22 66.7.21	유효만료
39	동방농업추식	마포구 공덕동	신덕관	배합사료	산란사료	산란용	16	4	7	11	64.7.28 66.7.22	〃
40	〃	〃	〃	〃	중추사	중추용	16	4	6	8	〃	〃
41	〃	〃	〃	〃	유추사	유추용	19	7	5	8	〃	〃
42	중앙사료회사	용산구 갈월동 75	정준호	산란배합사료	에그마나	성계산란용	16	3	6	10	64.8.20 66.8.19	〃
36	풍국사료공업사	동대문구 신내동 528	정동식	완전배합사료	유우배합사료	유우용	14	3	13	11	64.8.22 66.7.21	등록취소
51	〃	〃	〃	유우배합사료	초생추배합사료	유추용	19	4	6	9	65.6.15 67.6.14	〃

◎서울특별시고시제1063호

사방 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입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간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단적	면적
경동포	신대방	114-32	임야	0.0308	0.0308	0.0308	0	영동포구신대방동산 114-32	이광희

2. 해제사유

본 입지는 1956년도 사방지정지로써 사업 성공하여 사방지정지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64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 로선 돈암동—수유리간 포장공사
2. 공사의 종류 포장공사
3. 착공년월일 1966년 7월 5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11월 2일
5. 총공사비 9,672,251.64원
6. 부담금총액 6,284,863.57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65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196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 로선 안암동—성북구

- |           |                        |
|-----------|------------------------|
| 2. 공사의 종류 | 안압천복개공사                |
| 3. 착공년월일  | 1966년 5월 4일            |
| 4. 준공년월일  | 1966년 10월 31일          |
| 5. 총공사비   | 8,519,637원             |
| 6. 부담금총액  | 1,277,945.55원          |
|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
|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

◎서울특별시고시제1066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결 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 |            |                        |
|------------|------------------------|
| 1. 공사시공 로선 | 고대앞—홍농간                |
| 2. 공사의 종류  | 도로 확장공사                |
| 3. 착공년월일   | 1966년 6월 10일           |
| 4. 준공년월일   | 1966년 10월 30일          |
| 5. 총공사비    | 14,375,560원            |
| 6. 부담금총액   | 7,187,780원             |
|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
|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29호

도심지 동청사 건립활용 희망자 공모

1. 취 지

지금 수도서울은 시민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나 싶이 “새서울 건설”이다



는 기치 밑에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정을 경영화하고 합리화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 밑에서 금반 서울시는 도심지내에 있는 동 대지에 시민여러분께서 고층빌딩을 건립하여 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두상(기한부)으로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현대식 수도서울의 면모를 갖추고 도심지내의 건물수요를 충족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 건립대상동

구	별	동 명	면 적	소	제	지
종	로	구 비 파 동	36평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51번지
◇		광 교 동	19◇	◇	◇	청진동 135의 1
◇		종 자 동	16.8◇	◇	◇	관철동 129
◇		탑 동	27◇	◇	◇	낙원동 229
◇		대 사 동	40	◇	◇	인사동 171
◇		종 5 동	12.5	◇	◇	종로5가 280의2
◇		신 문 동	18◇	◇	◇	신문로1가58의4
중	구	홍 천 동	79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5
◇		명 동	35◇	◇	◇	명동 2가 63
◇		충 무 로	39◇	◇	◇	충무로 2가 29
◇		1,2가 동	14.7◇	◇	◇	을지로 1가 178의2
◇		울 지 로	38.4	◇	◇	을지로 3가 1207의2
◇		2,3가 동	43◇	◇	◇	을지로 4가 169의5
◇		울지로4가동	50◇	◇	◇	을지로 5가 195
◇		훈 련 동	23.7◇	◇	◇	주동교 252
◇		주 교 동	15◇	◇	◇	인현동 1가 78의2
◇		인현1가동	15.5◇	◇	◇	장교동 7
◇		청 계 동	148.6◇	◇	◇	동작동 19의40
◇		동 자 동	24◇	◇	◇	성동구 공인동 24
성	동	구 홍 인 동	70◇	◇	◇	성동구 신당동 370의27
◇		청 구 동				

(기타 본 대상동 이외에도 신청자가 신축을 희망하는 등)

3. 건립조건

1. 신축건물기준

가. 5층 이상의 현대식 고층건물(철근콘크리트조)

나. 구체적인 설계내용은 기부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시가 결정한다

2. 용도자격

전1항의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

3. 건축비

가. 건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자중수수료포함)은 기부자부담으로함

나. 공사는 당시의 감독하에 기부자 시공으로 함

4. 기 부

가. 신축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시에 기부한다

나. 기부절차(부수절차포함)는 시에서 대행하여 일체의 비용은 기부자 부담으로 함

5. 무상사용

가. 한 계

당시가 필요로하는 1층으로부터 층별 순위로 연50명은 제외한 부분의 건물

나. 기 간

기부자가 부담한 건축비와 무상대부 받은 건물의 임대료(은행평가)가 상쇄되는 기간

6. 선정기준

당시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7. 위임조항

기타 이에 부수되는 개별적인 사항은 당시의 결정에 의한다

4. 신청기간

1966. 8. 10

1966. 8. 20 (10일간)

5. 신청서 접수

전립대상지 관할구청(총무과)

6. 기타사항

신청서용지 배부 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건립예정지 관할 구청이 문외하시  
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호 玉

◎서울특별시공고제130호

1966년산 하곡수매 요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곡수납장소  
별 일자를 지정하니 각 의무자는 이기간내에 빠짐없이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8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玉

구청별	구분	장 소	일 자
동 성	대 문	망우출장소	8. 8
		천호농협창고	8. 9
	동	송파출장소	8. 10
		새곡동 농협창고	8. 11
		언주출장소	8. 12
성 영	북	노래출장소	8. 13
		동 포	신동출장소
	관악출장소		8. 13
	오류출장소		8. 8
	가양동농협창고		8. 9
	양동출장소		8. 10
	삼평정미소		8. 11

◎서울특별시공고제13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중 일부에 대한 관  
지 계획및 환지 예정지 지정을 도시계획법 제31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환지 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장 金 玄 玉

◎서울특별시공고제132호

경찰직및 소방직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의한 제9회 소방사로 승진 시험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서기 196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장 金 玄 玉

1. 시험 시행 일자

가. 필기시험 66. 8. 30. 09:00

나. 면접시험 66. 9. 5. 09:00

2. 시험장소

가. 필기시험 서울 경찰학교

나. 면접시험 경찰국

3. 응시자격

가. 경찰직 및 소방직 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규정된 응시자격을  
가진자 단 경찰직 및 소방직 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8조 19조등 시  
행세칙 제5조에 해당하는자는 응시 할수 없다

4.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및 시행기간

필기시험은 경찰직및 소방직 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행한다

(1) 법제대의.....09:00—09:50

(2) 행정 법.....10:10—11:00

(3) 소 방 법.....11:20—12:10

(4) 선택과목.....14:00—14:50

(예방기술 방어기술 소방물상중 택일)

나. 면접시험

경찰직 및 소방직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4항에 의하여 행한다

5. 근무 성적등의 종별 배점

경찰직 및 소방직 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세칙 제9조 2항에 의한 근무 성적 등의 종별 배점 비율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산출할것

가. 경력 평정 (15%) 및 근무 평정 (5%) 산출기준은 경력 평정 규정 및 근무 성적 평정 규정에 의하여 점수를 산출 할것

나. 훈련 성적 (3%)

- 1. 소방원에서 받은 기본 교육 이수자는 1회1점 특수 교육이수자는 1회 0.5점을 인정 산출함
- 2. 타 직급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전항의 훈련점수가 3점을 초과할시는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상 훈

1. 훈 장

가. 무공 훈장

화랑 무공 훈장.....1회 2점

인현 무공 훈장.....1회 2점

나. 소성 훈장

녹조 소성 훈장.....1회 2점

옥조 소성 훈장.....1회 2점

다. 근무 공로 훈장

4등 근무 공로 훈장.....1회 2점

5등 근무 공로 훈장.....1회 2점

2. 표 장

- 가. 방위포장.....1회 1.5점
  - 나. 면려포장.....1회 1.5점
  - 3. 공적상
    - 가. 대 통 령 상.....1회 2점
    - 나. 국무총리상.....1회 1.5점
    - 다. 장 판 상.....1회 1점
    - 라. 시도지사상.....1회 0.5점
    - 마. 서 장 상.....1회 0.25점
  - 4. 우등상.....1회 1점
  - 5. 전함의 훈포장은 상훈법에 의한 상을 의미하고 표창은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상을 의미한다
  - 6. 모든 상훈 관계는 소방원에서 받은 상훈만을 인정하며 동일 공적으로 수계의 상을 받았을시는 최고직급자의 상의에 의하여 점수에 계산토록 한다
  - 7. 상훈 총점수는 7점 만점으로 계산하고 7점이 초과되는 상훈 관계는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8. 정부 표창 규정 이전에 발행한 치안국장 및 시도 경찰국장상은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제출 서류
- 가. 본 승진 시험 응시자는 승진시험시행세칙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66. 8. 22까지 훈련 및 상훈 관계 사본 원부 본 위원회에 제출 할것
  - 나. 승진시험 시행 세칙 제6조 1항에 있는 응시자 명부는 별첨 서식으로 변경 작성 관계자의 점인 확인인을 날인하여 제출할것
7. 기 타
- 가. 모든 일자 계산은 66. 8. 10 현재를 기준으로 할것
  - 나. 응시자 명단은 원문으로 할것
  - 다. 본 승진 시험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 200원(정부 수입인지)을 기록 카

드 사본 견면에 첨부 제출 할 것

라. 시험 응시자는 청색 볼펜 또는 청색 만년필을 지참 시험 40분 전에 결합하여야 한다

첨부 응시자 명단

응 시 자 명 단

확인자 인

검인자 인

순 위	소 속	성 명	경 력 평정적	근무성 적평정적	훈련성적	상 훈	계	선택과목

◎서울특별시공고제13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공고

1. 시험 실시구분

시 험 종 별	응시원서접 수 기 간	필기시험일자	필기시험장소	비 고
계 2 종	66.9. 5—9.14	66.9.17—14:00	시공무원교육원 및 면허시험장	4회 1차
계 1 종	◇ 9.12—9.21	◇ 9.24—◇	◇	◇
소형특수	◇ 9.19—9.28	◇ 10.1—◇	◇	◇
계 2 종	◇ 9.26—10.5	◇ 10.8—◇	◇	4회 2차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자는 필기시험장에서 알림

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기능시험일자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칭 받을 것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1) 보통제 1종 : 교통관계법령

(2) 보통제 2종 및 소형특수 : 교통관계 법령 및 구조 취급방법

나. 기능시험

지각반응, 검사, 코-스, 장거리

3. 응시자격

- 가. 도로교통법 제57조 (면허시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나. 보통제2종(4회1차)은 1948. 9. 16 이전에 출생한자
- 다. 보통제1종은 1941. 9. 23 이전에 출생한자로서 보통제2종면허를 소지하고 만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자
- 라. 소형 및 특수는 1948. 9. 30 이전에 출생한자
- 마. 보통제2종(4회2차)은 1948. 10. 7 이전에 출생한자

4.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매 (원서이면, 신체검사란에는 명동소재 국립경찰병원의 신체검사를 받을것)
- 나. 주민등록표의 초본1매
- 다. 시험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자는 그에 따른 증명서
- 라. 사진2매 (반명합판)
- 마. 보통제1종면허 응시자는 3년이상의 경력증명서 1부(시, 도지사 발행)
- 바. 수수료, 3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지)

5. 제출처

한남동 소재 운전면허 시험장  
(단 보통제1종 면허접수는 경찰국 교통과)

6. 기타

- 가. 필기도구는 청색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할것
-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찰국 교통과나 각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金 玄 玉

◎서울특별시공고제134호

공영주택(조합주택) 공모 공고



1966년도 당시 주택건설 계획에 의거 건설 희망자를 다음요령에 따라 무주택 서울 시민을 상대로 공모함

서기 196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영주택(조합)신청절차

가. 서울시민중 무가옥자 40—60명 이상 단위로 조합을구성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 1) 대지조사 신청서 1통
- 2) 건축대지 증명서 1통
- 3) 등기 부등본 1통
- 4) 조합원 명단 1통
- 5)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엔 매매계약서 및 그 사본과 매도인의 인감증명 또는 지주의 사용 승락서 1통
- 6) 무가옥 증명 1통(조합원)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1966. 8. 31부터 1966. 9. 3(4일간) 당시 도시계획국 주택과

- 1) 추천 일시및 장소 대지 조사결과 적격한 조합에 한하여 추후 통지함

2. 공영주택(조합)건설 대상지

가. 성동구 성수동 1가(성동교)에서 위키힐까지의 도로연변및 동대문구 면목동 토지구획지구내

3. 모집 조합원

가. 성수동...위키힐— 1개조합

나. 면목토지구획지구 1개조합

4. 건설호수

가. — 60호

나. — 40호

5. 호당용자한도액 — 180,000원

6. 기타 상세한것은 당시 도시계획국 주택과에 비치한 공영주택(조합)건설



요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35호

시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다음포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함.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1966. 8. 27. 10.00
3. 입찰등록    1966. 8. 26. 12.00까지 시세및 국세 납세필증을 구  
                  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제파에 등록하여야함
4.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현금 또는 시중 은행 보  
                  증수표로서 동봉입찰하여야함
5. 개찰장소및일시   입찰 장소에서 집행관이 예고함
6. 매각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이상 정기에금을  
                  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서  
                  3환운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낙찰자가 위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  
                  찰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당시 소유인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당시  
                  가 철거할때까지 원형을 변경하거나 철거요청을 하지  
                  못함  
                  다) 기타 지상물 명도는 일체 매수자의 책임으로함  
                  라) 재산 매각후 평수에 증감이 생할 경우에는 당  
                  시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함
7. 계약조항은 당시관제파에 비치되어 있으니 상세한 것은 이곳에 문의 하  
                  시안
8. 재산의 표시

번호	소 계 지			지목	횡 수	비 고
	구	동	번 지			
1	동대문	창 신	403-2	철	23.00	
2	◇	◇	409	◇	17.00	
3	◇	◇	410-2	◇	82.00	
4	◇	◇	410-4	◇	0.90	
5	◇	◇	411-2	◇	20.50	
6	◇	◇	411-14	◇	5.90	
7	◇	◇	422-3	◇	15.00	
8	◇	◇	423-3	◇	42.00	
9	◇	◇	425-3	◇	34.00	
10	◇	◇	428-4	◇	32.20	
11	◇	◇	442-3	◇	1.10	
12	◇	◇	444-1	◇	6.90	
13	◇	◇	444-14	◇	65.20	
14	◇	◇	44-3	◇	32.90	
15	◇	◇	444-4	◇	93.50	
16	◇	◇	445-1	◇	14.30	
17	◇	◇	446-3	◇	7.50	
18	◇	◇	446-5	◇	46.20	
19	성 동	마 장	533-3	◇	181.30	
20	◇	행 당	192-23	◇	188.90	
21	◇	◇	192-22	◇	21.30	
22	◇	◇	28-1	◇	15.00	
23	◇	◇	28-2	◇	18.00	
24	◇	◇	28-8	◇	46.00	
25	◇	◇	29-3	◇	47.00	
26	◇	◇	31-5	◇	120.00	
27	◇	◇	34-1	◇	22.00	

( 6 0 ) 공 고

28	성동구	행당동	34-3	철	11.00
29	〃	〃	41-3	〃	67.00
30	〃	〃	77-2	〃	56.00
31	〃	〃	82-2	〃	63.00
32	〃	〃	145-1	〃	37.00
33	〃	〃	148-1	〃	5.00
34	〃	〃	158-9	〃	108.00
35	〃	〃	158-11	〃	200.00
36	〃	〃	169-1	〃	30.00
37	〃	〃	산8-20	〃	120.00
38	〃	〃	산22-3	〃	100.00
39	〃	홍익동	122-1	〃	129.50
40	〃	〃	122-4	〃	10.80
41	〃	〃	146	〃	149.00
42	〃	〃	130	〃	43.90
43	〃	〃	192-21	〃	153.21
44	〃	마장동	533-5	〃	95.90
45	〃	〃	533-6	〃	120.30
46	〃	홍익동	120	〃	101.00
47	〃	마장동	533-2	〃	161.00
48	〃	화 양	119-2	〃	122.00
49	〃	〃	111-3	〃	697.00
50	〃	〃	111-6	〃	36.00
51	〃	〃	112-1	〃	18.00
52	〃	〃	112-2	〃	71.00
53	〃	〃	114-2	〃	122.00
54	〃	〃	115-2	〃	168.00
55	〃	〃	119-2	〃	40.00
56	〃	〃	121-1	〃	6.00

57	◇	◇	132-1	◇	28.00
58	◇	◇	135-4	◇	754.00
59	◇	◇	148-2	◇	247.00
60	성동구	모전동	1-2	◇	3.00
61	◇	◇	2-7	◇	141.00
62	◇	◇	2-11	◇	93.00
63	◇	◇	117-2	◇	15.00
64	◇	◇	128-2	◇	125.00
65	◇	◇	131-2	◇	80.00
66	◇	◇	130-1	◇	86.00
67	◇	◇	132-2	◇	50.00
68	◇	◇	133-2	◇	59.00
69	◇	◇	134-2	◇	175.00
70	◇	◇	135-1	◇	26.00
71	◇	◇	117-3	◇	54.00
72	◇	◇	136-2	◇	19.00
73	◇	◇	136-3	◇	7.00
74	◇	◇	137-2	◇	55.00
75	◇	◇	164-2	◇	41.00
76	◇	◇	169-2	◇	61.00
77	◇	◇	195-3	◇	115.00
78	◇	◇	196-3	◇	110.00
79	◇	◇	197-2	◇	19.00
80	◇	◇	198-3	◇	85.00
81	◇	◇	199-2	◇	419.00
82	◇	◇	206-2	◇	78.00
83	◇	◇	208-2	◇	11.00
84	◇	◇	210-2	◇	43.00
85	◇	◇	212-2	◇	43.00

(62) 공 고

86	〃	〃	산2-2	철	210.00	
87	〃	〃	2-5	〃	110.00	
88	〃	구 의	410-2	〃	44.00	
89	〃	〃	406-2	〃	114.00	
90	〃	〃	407-2	〃	0.50	
91	〃	〃	408-2	〃	45.00	
92	〃	〃	410-2	〃	76.00	
93	〃	〃	414-3	〃	150.00	
94	〃	〃	416-6	〃	7.00	
95	〃	〃	416-7	〃	50.00	
96	〃	〃	416-14	〃	17.00	
97	〃	〃	416-15	〃	127.00	
98	〃	〃	416-17	〃	38.00	
99	〃	〃	438-2	〃	680.00	
100	〃	〃	439-2	〃	0.90	
101	〃	〃	394-2	〃	137.00	
102	성북구	미아동	산38-2	대	47.00	
103	〃	〃	산38-2	〃	35.00	
104	〃	〃	산38-2	〃	34.00	
105	서대문구	용 암	244-116	〃	225.00	지상개입진 물있음

위 공고 함

서기 196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36호

1. 주소 또는 거소

1. 재산압류 통지서와 납입고지서, 독촉장

1. 납입 기한

가. 재산압류 통지서 65년 12월 31일

나. 납입고지서(추가분) 66년 7월 30일

다. 독 축 장(추가분) 66년 8월 14일

상기 재산 압류통지서와 66년도 추가부과분 납입고지서 및 독축장을 면목토 지구획정리비 채납자에게 동기우송 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명으로 직접 본 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서기 196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채 납 자 명 단

NO	지목	물건지	분담금	주 소	성 명	비 고
24	田	면목동 837	333	동대문구용두동89-3	李 桂 成	66년도 추가분 고지서 독축장
7	畜	458	4,356	동소문동6가216	朴 光 錫	〃
17	田	838	1,956	계기동 86	金 榮 淑	〃
23	〃	390-2	163	구로동공영주택1107號	裒 南 壽	〃
9	畜	456	3,473	담십리동 429	林 英 子	〃
19	田	389	4,201	중암동 125-47	姜 少 阿	〃
C 41	畜	805-1	205,878	계기동 132-18	尹 華 榮	재산압류통지서
C 15	〃	549	63,697	계기동 13-51 13-1	金 斗 滿 李 順 石	〃
C 102	〃	347-3 347-5	42,166 95,313	용두동 689-3	金 明 禎	〃
B 38	田	800-1	18,949	필동 3가 62-16	姜 起 瑛	〃
B 201	畜	454	71,896	회기동 62-32	尹 今 分	〃
	田	427-2	39,251	수유동 567-3	金 成 梅	〃
	〃	886-3	26,046	면목동 886-3 上鳳洞 378	金 元 吉 金 允 培	〃
B 106	〃	390-1	95,360	용두동 689-1 안암동 1가 125	俞 容 德 俞 根 培	〃
B 145	〃	886-1	56,076	면목동 886	安 東 烈	〃
C 75	畜	378	440,001	예장동 6-3	李 謙 柱	〃

(64) 풍 요

◎서울특별시공고제187호

1966년산 하곡수매 요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곡수납장소  
별 일자를 지정하니 각의무자는 이기간내에 빠짐없이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구정별	구분	장 소	일 자
성	동	천호농협창고	8. 23
		송파출장소	8. 24
		새곡동 농협창고	8. 24
		언주출장소	8. 25
성	북	노해출장소	8. 26
영	등 포	신동출장소	8. 25
		관악출장소	8. 26
		오류출장소	8. 27
		가양동농협창고	8. 27
		양동출장소	8. 25
		삼평정미소	8. 23

◎서울특별시공고제188호

시유건물(철거조건부)매각입찰공고

1. 건 물 표 시
- 1) 서대문구 녹번동49번지 지상연와조와즙 평가건 전평 23.3평 (녹신제1동 사무소)
  - 2) 서대문구 용암동 2-10 동지상 세면연와조 평가건 사무실 63.6평 (농촌지도소 사무실)
  - 3) 성동구 신당동 390번지의 26-27지상 목조와즙 2계건 사무실1동 연건평 23.39평 (무학1동 사무소)
  - 4) 마포구 공덕동 432-4 세면부록 도단즙8평 공중변소



- 5) 서대문구 만리동 1가1 세면외증 공중변소 2.75坪
- 6) 성동구 송정동 62 연와조 도단잡 공중변소 4.50坪
- 2. 입찰 일시 서기 1966년 8월 29일 10시
- 3. 입찰 장소 당시 재무국 관제과
- 4. 입찰 방법 일반경쟁 입찰
- 5. 입찰 등록 서기 1966년 8월 27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 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 6. 입찰 보증금 입찰 금액의 1환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표를 납부한다
- 7. 철거및대금납부 낙찰가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 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겠음

서기 196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金 玄 玉

◎서울특별시공고제139호

내무부 고시제 23호(52. 3.25)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고대앞-홍능 도로 공사 구역내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공사명 고대앞-홍능간 도로 확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의세목 별지 조서와 같음

서기 196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金 玄 玉

토 지 조 서

연번	분할전표시		지목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 번	평수		지 번	평수	주 소	성 명
1	동대문구 희기동4-78			동대문구 희기동산4-80	733	경기도 광주시 서부면 광암리 333	이 계 열

지 장 물 조 서

순번	소재지		구조	총평수	수용 평수	소유자		비고
	소재지명	지번				주소	성명	
1	동대문구 회기동	산 4-11	목조와즙	11 <sup>3</sup>	11 <sup>3</sup>	동대문구 회 기동산4-11	최팔동	

◎서울특별시공고제140호

건설부 고시제 2494호(66. 6. 22)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성수동1가  
광장동 43의1앞 간 도로확장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코저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토지의 세목(별첨 조서와 같음)

서기 196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 金 玄 玉

土 地 調 書

番號	分割前表示		分割後表示 (收用)		所 有 者		關 係 人		
	地 番	坪數	地 番	坪數	住 所	姓名	住 所	姓名	備 考
1	廣壯洞 534	167田	534	167	九宜洞 200	李福錫			
2	松亭洞 57-2	21垆	57-2	21	松亭洞 56	鄭永洙			
3	松亭洞 56-11	36田	56-11	33	〃	〃			
4	華陽洞 111-45	75田	111-45	15	〃	〃			
5	松亭洞 53-1	334畓	53-7	148	華陽洞 132-1	鄭彰孝			
6	〃 53-5	398〃	53-11	333	君子洞 山2	서울女 子學園			
7	70-25	23田	70-35	13	松亭洞 64-3				
8	70-32	32田	70-40	14	〃	崔庚成			
9	64-3	87垆	64-5	68	〃	〃			
10	〃 65	162畓	65-2	49	上往十里 洞 436	文聖仁			

11	華陽洞 150-20	200 笠	150-20	74	崇仁洞 241-9	崔載勳	石串洞 345	鄭今山	根抵當 630,000
12	148-7	25 番	148-7	約8	〃	〃			
13	150-5	406 田	150-5	30	〃	〃			
14	148-1	404 番	148-1	138	新堂洞 372-442	梁正模			
15	116-3	55 笠	116-17	2	華陽洞 132	金學元			
16	111-1	247 笠	111-1	33	毛陳洞 169-4	申鳳植			
17	毛陳洞 199-26	182 笠	199-26	34	199-26	姜日雲	小公洞 62-5	韓國商 業銀行	根抵當 800,000
18	九宜洞 394-5	9 笠	394-5	9	九宜洞 46	金福童			
19	125-15	37 笠	125-32	6	125-12	裴辨守			
20	毛陳洞 山12-1	60 林	山12-1	60	獎忠洞 1才 119	李相淳	南大門路 1街14番	朝興 銀行	根抵當 6,000,000
21	九宜洞 山143-1	60 林	山143-1	60	〃	〃	〃	〃	〃
22	山144-3	30 〃	山144-3	30	〃	〃	〃	〃	〃
23	102	510 笠	102-2	66	九宜洞 104	永都製 瓦株式 會社			
24	101-10	268 笠	101-13	24	〃	〃			
25	408-1	44 〃	408-1	44	〃	〃			
26	195-1	10 番	195-1	10	禮智洞 177	于世中			
27	190-2	51 田	190-2	9	九宜洞 126	劉同根			
28	〃 188	49 笠	188	49	新堂洞 369-47	劉允男			
29	〃 188-4	243 〃	188-11	184	南學洞 24-1	袁學基	南大門路 1才 14	朝興 銀行	根抵當 3,000,000
30	〃 188-1	867 〃	188-9	142	〃	〃	〃	〃	〃
31	〃 188-5	50 〃	188-10	41	九宜洞 188	李貞祿			
32	〃 188-8	68 田	188-8	68	〃	〃			
33	〃 190-1	170 田	190-1	169 <sup>00</sup>	九宜洞 126	劉昌烈			
34	〃 192-1	829 番	192-1	809	〃 402	吳鳳學 外 4人			
35	〃 440-1	192 〃	440-3	80	杏堂洞 322-74	金璿玉			
36	〃 440-2	63 〃	440-2	63	〃	〃			

37	毛陳洞 191	132	埜	191-33	115	毛陳洞 192	曹漢順			
38	192-2	23	◇	192-2	23	◇	◇			
39	192-1	58	◇	192-1	58	◇	文千弘			
40	松亭洞 53-6	135	溝	53-6	135	萬里洞 47-76	朱廣煥			
41	九宜洞 99-2	51	◇	99-2	51	忠正路 27-99	金在儼			
42	松亭洞 57-4	4	田	57-4	4	華陽洞 115-7	羅仁鎭			
43	九宜洞 101-11	297	溝	101-11	約80	上往十里 洞 47	崔 英			
44	◇98-2	103	◇	98-2	103	長橋洞 4	女海元 外 2人			
45	聖水洞 656-566	591	埜	656-668	4	馬場洞 465-9	朴浩燮	서울特 別市	押	留
46	◇	◇	◇	656-566	184	◇	◇	◇		
47	◇	◇	◇	656-610	31	◇	◇	◇		
48	廣壯洞 535-2	143	鐵	535-2	22	忠南結成 郡 洞 里	金完鎭			
	計				3912 <sup>00</sup>					